

위원회 운영규칙 [2003. 7. 24 규칙 제144호]

일부개정 2003. 12. 1 규칙 제156호
2005. 3. 15 규칙 제175호
2005. 9. 29 규칙 제183호
2007. 3. 8 규칙 제196호
2010. 3. 2 규칙 제232호
2012. 6. 4 규칙 제259호
2013. 2. 1 규칙 제266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2013. 5. 24 규칙 제272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2014. 3. 13 규칙 제282호
2014. 10. 20 규칙 제285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2014. 12. 22 규칙 제287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2015. 4. 7 규칙 제299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2017. 2. 27 규칙 제317호
2017. 2. 27 규정 제159호(직제규정)
2018. 4. 1 규칙 제328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2019. 5. 15 규칙 제337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2019. 7. 9 규칙 제339호(근무성적평가규칙)
2023. 6. 1 규칙 제370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2023. 6. 30 규칙 제409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2025. 8. 12. 규칙 제413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정관 제29조의 위원회와 기타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절차 및 방법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구원 주요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6.4., 2015.4.7)

제2조(적용범위) 본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위원회에 적용한다.

1. 인사위원회
2. 기금관리위원회

제3조(위원회의 종류) ①연구원의 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연구위원회
2. 심의위원회
3. 기타 위원회

②각 위원회는 ‘소회의’를 둘 수 있다

제4조(설치절차) 제3조제①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할 때에는 아래 각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위원회의 명칭
2. 위원회의 목적
3. 위원회 존속 기간
4. 위원장 및 위원 구성 계획

5. 운영 방법(의결 정족수, 소집 절차 등)
 6.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소요 예산 및 확보 계획
 7.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예산지원)** 해당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예산의 범위내 또는 외부로부터의 예산 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동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금액·기준·방법 등은 연구원 제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위원회의 해체)** 위원회는 아래의 각호에 해당할 때는 해체된 것으로 본다.
1. 최초 존속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다만,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얻어 연장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목적이 달성되거나 상실되었을 때
 3. 위원회의 운영이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운영된다고 원장이 판단하여 해체를 결정할 경우
- 제6조의2(재심의요구)** 원장은 위원회의 의결내용에 대하여 재심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7.3.8)
- 제6조의3(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부의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는 당해 위원은 안건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단, 제척위원이라도 의결정족수 미달시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참여할 수 있다. (신설 2007.3.8)
- 제7조(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연구원의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 연구위원회

- 제8조(연구위원회의 설치)** ①질 높은 연구를 위해 연구업무의 기획, 지도, 평가 등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연구위원회를 둔다.
- ②연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3.12.1)
- ③위원장은 부원장이 되며, 위원은 연구기획실장, 원장이 위촉하는 약간 명의 선임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연구기획실 업무담당자를 간사로 임명하여 위원회의 서무와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3.12.1, 2005.3.15, 2007.3.8, 2012.6.4, 2013.2.1., 2013.5.24., 2014.3.13, 2014.10.20., 2014.12.22., 2017.2.27., 2018.4.1., 2019.6.11., 2023.6.1., 2025.6.30.)
- ④위원장의 사고 시에는 연구기획실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5.3.15, 2007.3.8., 2013.2.1.,2014.3.13., 2014.12.22., 2017.2.27., 2019.6.11.,2023.6.1., 2025.6.30.)
- 제9조(심의사항)** 연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기획 및 지도
 2. 경기도 및 시군 정책 연구수요 모니터링
 3. 연구원의 중장기 연구계획 수립 및 자체연구사업계획 심의

4. 수탁과제 등 기타 연구사업계획 심의
5. 연구성과 및 연구자에 대한 평가
6. 기타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부의하는 사항

제10조(소집과 의결) ①연구위원회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원장 및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 (개정 2007.3.8)
2.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②연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필요시에는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서면심의회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3.2., 2017.2.27)

제11조(의결내용의 보고) 연구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원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삭제 2019. 7.19)

제3장 심의위원회

제13조(심의위원회 설치) ①연봉제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의 제정·개폐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6.4., 2025.8.12.)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원장이 되며, 위원은 연구기획실장, 직원 과반수 이상이 참여하는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자 및 원장이 위촉하는 약간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해당업무 실무자를 간사로 임명하고 위원회의 서무와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하게 할 수 있다. 단,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03.12.1, 2005.3.15, 2005.9.29, 2007.3.8, 2012.6.4., 2013.2.1., 2014.12.22., 2017.2.27., 2018.4.1., 2019.6.11., 2023.6.1., 2025.6.30.)

④위원장의 사고시에는 연구기획실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5.3.15, 2007.3.8., 2013.2.1., 2014.12.22., 2017.2.27., 2018.4.1., 2019.6.11., 2023.6.1., 2025.6.30.)

제14조(심의사항) 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6.4)

1. 삭제(2025.8.12.)
2. 삭제(2025.8.12.)
3. 보수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연봉제에 관한 세부사항
4. 규정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
5. 삭제(2025.8.12.)
6. 기타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부의하는 사항

제15조(소집과 의결) ①심의위원회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2.6.4)

1. 원장 및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 (개정 2007.3.8)
2.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②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필요시에는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서면심의를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6.4., 2017.2.27)

제16조(심의결과의 보고)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원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6.4)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규칙의 폐지) 각종위원회설치규칙 및 연구자문위원회운영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 ‘연구자문위원회, 자체연구심의위원회, 용역사업심의위원회, 연구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은 ‘연구위원회’에서, ‘채용전형위원회, 재임용심의위원회, 연봉제심의위원회, 규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은 ‘심의위원회’에서 각각 심의·의결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3.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3.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3.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3.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6.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경기개발연구원 직원채용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중 “심의·의결한다”를 “심의한다”로 한다.

②경기개발연구원 연구직 재임용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6조중 “심의·의결한다”를 “심의한다”로 한다.

제4조중 “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를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로 한다.

제6조의 제명을 “(심의의결사항)”에서 “(심의사항)”으로 한다.

제8조중 “의결결과를”을 “심의결과를”로 한다.

제9조중 “의결정족수”를 “의사정족수”로 한다.

부 칙(2013. 2.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5.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3.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2.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4.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2.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4.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6.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7.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6.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 6.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 8.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